

##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20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법 인	명칭	전화번호		
	소재지			
대표자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행정자치부장관**  
**경찰청장**     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설립발기인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) 1부</li> <li>2.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</li> <li>3. 재산목록(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) 및 그 증명서류와 출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</li> <li>4.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</li> <li>5.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·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</li> <li>6. 창립총회 회의록(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) 1부</li> </ol> <p>※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</p>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(건물) 등기부 등본	

### 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 : 행정자치부, 경찰청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)